

스웨덴 연금개혁 고찰에 따른 시사점*

최수지**

〈 초 록 〉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용어 : 명목확정기여, 자동재정 균형장치, 소득비례연금, 적립식 개인계정연금, 최저보증연금

* 본 연구는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소 대리

제1장 서론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은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선진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 뿐 만아니라, 사회적 집단 간의 높은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복지국가의 롤 모델로 손꼽힌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스웨덴은 대폭적인 연금급여의 삭감과 연금급여 지급조건 강화 등을 통하여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차원에서의 사적소득보장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개혁하였던 나라에 해당한다. 스웨덴에서 새롭게 도입한 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소득비례방식으로 기존의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하는 비중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 차원에서 최저보장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제도 개혁 이전에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관여를 한 반면, 제도 개혁 이후에는 전면적 관여보다는 부분적 관여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부분적 관여로 연금개혁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은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의 재정적 리스크(Risk)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재정균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경제적 상황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불리해지고 연금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에는 제도 가입자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부담금을 더 거둬들이는 반면, 지출되는 급여액을 자동으로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금 재정적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또한 재정방식은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급여의 설계방식을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에서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고정시키고 급여수준을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택하였다. 확정기여형 방식은 평생 동안 기여한 보험료와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을 개인연금자산으로 하여 이를 수급시점의 세대별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연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을 통해 지급하는 연금액은 생애기간 동안 동일한 기여금을 납부하여도 세대별 기대수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므로, 기대수명에 따른 연금재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개혁을 통하여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반면, 국민들의 빈곤한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수단 마련을 연금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최근 자동균형장치에 대한 사항이 보다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통해 사학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스웨덴의 공적연금과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 역시 다르다. 따라서 스웨덴의 연금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비현실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사학연금의 경우 그동안의 몇 차례 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수적(parametric) 개혁에 그쳐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본 조사연구는 보다 전면적인 연금개혁의 가능성을 전제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 연금개혁 사례가 사학연금제도의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당장 제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15년 동안의 합의과정을 거쳐 도달한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목적의 본 조사연구가 그리 이르거나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본 조사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기존 스웨덴 연금제도의 체계를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스웨덴 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인식을 통하여 연금개혁의 배경과 개혁방향을 알아본다. 제 IV장에서는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 V장에서는 본 조사연구의 결과 요약 순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 기존 스웨덴 연금제도 체계 (스웨덴 공적연금제도 구조)

스웨덴은 1913년 세계 최초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자는 기혼여성, 공무원,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소유자를 제외한 만 16세 이상 만 66세 사이의 모든 국민이었고, 67세부터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세월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보험방식과 부조방식의 양 형태로 혼합되어 있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완전적립식 기여연금과 소득, 자산조사(Earning Test)¹를 수반하는 보충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보험료를 납입한 자만 연금급여를 받는 소득비례연금을 주로 하되, 빈곤 노인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충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여연금의 경우에는 설정된 연금액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아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1935년에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던 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사용자와 자영자가 연금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없어도 급여지급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 공적연금 수급의 보편성과 급여의 적정성이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였으며, 급여격차를 줄이고 수급권 및 노후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에 통합하여 공무원에게도 기초연금 가입자격을 부여했다.

1946년에는 기여연금과 자산조사가 수반되던 보충연금을 통합하여 보편적 기초연금제도(Allmänna Försäkring : AFP)로 전환했다. 이 제도는 전 국민 의무가입제도로 성별, 직업, 계층, 국적에 관계없이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적용대상 이었다. 스웨덴에 거주하면 누구나 연금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단연 복지체계의 선두였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보험료수입과 국고보조로 이뤄졌는데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와 자영자에 국한되었으며 근로자는 납부의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1.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변동하는 것으로서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연금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정수준 연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소득심사(연금지급정지)라고 함.

납부의 의무가 없는 대신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기여요건이 아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3가지 연금을 주축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일반보충급여, 장애수당, 육아수당, 공적주택수당, 부인보조, 아동보조 등을 갖추었다. 노령연금은 3년 이상의 기여실적이 있거나 최소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에 달한 자에게 지급했다. 60~64세까지 연금의 조기수급 시에는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었으며,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에는 연금액이 증액되어 지급되었다. 이는 근로자 평균소득의 20%에 상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정액급여로 기본액에 의해 결정이 됐다.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57년, 공적소득비례연금(Allmänna Tilläggs Pension : ATP)제도가 도입되었고,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와 자영자 등 경제활동인구가 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되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액급여인 1층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2층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형적인 2층 체계를 구성하였다. 2층의 소득비례연금의 재정방식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재정충격 완화 목적으로 별도의 완충기금이라고 하는 소정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정)부과방식이 적용되었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자영자는 전액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한선은 없었다. ATP는 3가지 연금급여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제공했는데 이중 노령비례연금은 최소 3년 이상 기본액 이상의 소득활동기간을 최소 지급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67세(1975년부터는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30년을 가입했을 경우 평생평균소득이 아닌 15년간의 생애 최고평균소득의 60%에 상당하는 연금(완전연금)을 지급할 정도로 관대한 제도였다.

이러한 소득비례연금이 도입되고 성숙하면서 기초연금과 비례연금 두 가지 모두 수급하는 사람과 기초연금 한 가지만 수급하는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9년에 비례연금 비수급자나 연금액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최대 보충액은 기본액의 55.5% 수준²이었으며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지급했다. 이로써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부조하는 보충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의 조화를 추구하는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로 스웨덴의 연금제도 개혁 이전의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2. 권혁진(2014)의 제IV장(인구고령화와 베버리지형 연금체계의 대응 : 스웨덴, 영국 사례분석)을 수정 인용하였음.

〈표 1〉 개혁 전 스웨덴 연금제도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13년	· 국민연금제도 도입(16세 이상 66세 사이 모든 국민) · 소득비례연금(기여연금) + 보충연금(소득 및 자산조사 수반)
1935년	· 적립방식 → 부과방식 전환 · 공무원연금 → 공적연금에 통합
1946년	· 보편적 기초연금(AFP) 도입(전 국민 의무가입제도)
1957년	· 공적소득비례연금(ATP) 도입(경제활동인구 적용대상) · 기초연금(1층) + 소득비례연금(2층) · 완충기금(소정의 기금을 보유하는 (수정)부과방식)
1969년	· 보충연금제도 도입(비례연금 비수급자나 연금액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지급)

제3장 스웨덴 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상황 (연금개혁 배경 및 방향)

1. 연금개혁 배경 및 필요성

스웨덴 구연금제도 하에서의 누적된 문제점은 연금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과거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대두된 문제점은 개인별 기여액, 급여액, 근로소득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것이다. 구 연금제도에서는 30년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그 이후의 납부된 보험료는 보장하지 않았으며, 육아기간, 복무기간, 실업·장애기간 등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소득능력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능력이 있는 유족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단기근무자, 소득활동 미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보충연금이 장기가입자의 노령연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장기가입자의 의욕을 박탈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지속적으로 근로할 이유를 감소시켜 조기퇴직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둘째, 스웨덴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정부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높은 세율의 조세로 관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복지국가 체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는 수입·지출의 불균형으로 제도의 유지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높은 실업률, 스웨덴 코로나의 통화 가치 하락, 공공부문 예산 적자 등은 스웨덴 국가 부담을 더욱더 증가시켰다.

셋째, 구연금제도의 연금급여 재원은 현재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충당되는 반면, 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은 과거 경제상황에 기초한다. 즉 연금제도 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임금에 연동되어 조달되고, 연금은 임금이 아닌 소비자물가에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스웨덴의 실질임금은 상당히 둔화되어 구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현역 근로세대의 부담이 이전세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넷째, 부과방식의 기초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매우 취약했다. 제도도입 당시에는 적용의 용이성, 국민의 높은 지지 등을 바탕으로 설계된 연금제도가 제도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구구조 등에 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기존 제도의 유지가 어려웠다.

다섯째, 소득비례연금은 30년을 가입했을 경우, 기본액을 감한 15년간의 생애최고평균소득 기간으로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무기간이 장기이고 소득이 안정적인 저소득자에게 불리하고, 고소득의 전문직, 자영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어 소득재분배의 왜곡이 발생하였다.

2. 연금개혁 과정

스웨덴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1980년대 심각한 재정불안정을 겪게 된다. 이런 경제 악화는 국내의 시장요인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불경기 영향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 통합은 스웨덴 국내시장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스웨덴은 경제적 빈곤을 인식하여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체감하게 된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대규모 의회 위원회가 아닌 의회의 각 정당 대표로 구성되는 소규모 실무 그룹에 의해 추진된다. 하지만 인구경제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개선안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이었다. 그로 인해 15년간(1984년~1998년)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야간, 노동자와 사용자간 대립으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7개 정당이 참가한 실무 작업반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연금제도 개혁안은 1998년 6월에 스웨덴 의회를 통과하여 1999년 1월부터 새로운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3. 제도개혁 방향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937년 이전 출생자들은 구 연금제도가 적용되었고, 1938년~1953년 사이의 출생자들은 구제도와 신제도가 동시 적용되었으며, 1954년 이후

출생자는 신제도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제도가 적용되었다.

스웨덴 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은 연금가입자와 수급자의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일정한 경제성장을 전제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연금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 이었다. 이런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설정된 주요 연금제도 개혁 원칙³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생애소득에 기초하여 기여하는 보험료 총액에 의해 모든 연금은 산정된다. 이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었던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비례연금에 통합하여 전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금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자기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연금액은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료는 경제성장률 및 소득상승률에 연동되는데, 이는 연금액을 기여에 연계하고 보험료와 연금의 실질가치도 경제성장률 및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보장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최저연금을 보장한다.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기초연금과 비례연금 비수급자나 연금액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보충연금을 없애고, 연금소득 조사만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최저보충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넷째, 새로운 연금제도는 환경변화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균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DB형(확정급여)에서 DC형(확정기여)으로 급여형태를 바꾸어 경제상태가 좋지 않거나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급여는 자동으로 조정되어 경제적 위험 및 장수위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처럼 스웨덴은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보라는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저조한 경제성장 등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개혁방향을 가지고 스웨덴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개혁을 추진하였다.

3. 박영근(2002)

제4장 스웨덴 연금제도개혁의 주요내용과 현황 및 시사점

1998년 연금개혁을 기점으로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기초연금(AFP), 소득비례연금(ATP), 보충연금의 연금체계를 NDC방식(명목확정기여)의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적립식 개인계정연금(Premium Pension), 최저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이라는 세 가지 연금 조합으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확정급여제도를 명목확정기여에 의한 부과방식 부분(16%, IP), 민간부문에서 운영되는 적립식 개인계정(2.5%, PP)부분으로 체계(2층)를 전환했다.

스웨덴 연금제도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스웨덴 국민들에게 충분한 연금 급여액으로 노후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하에서는 스웨덴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금제도 종류

가.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소득비례연금의 적용대상은 1954년 이후에 출생한 16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 자영자, 사회보장 급여수급자, 육아기간과 복무기간 등의 크레딧(credit) 수혜자 등에 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은 18.5%로 고정되며, 이 중 적립식개인연금(PP)의 부담률 2.5%를 제외한 나머지 16%는 부과방식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액 재원으로 사용된다. 사용자의 경우 부과대상소득의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임금에 대한 해당 보험료를 부과한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는 국고로 귀속되어 다른 조세와 함께 사망이나 장애급여, 최저보증연금 급여의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61세부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택의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지급가능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하는 연금액이 낮아지고, 반대로 기준연령인 65세보다 늦게 지급할 경우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조건은 없지만 가입자는 연간 최소한으로 정해진 크로나(SEK)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며, 연금의 해외 지급도 가능하다. 소득비례연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text{연금액(IP)} = \frac{\text{개인연금자산}^4}{\text{수급시점의 기대여명}}$$

스웨덴은 육아기간(자녀 1인당 4년), 병역기간(120일 이상), 학업기간, 조기퇴직·중증 장애기간 등의 크레딧을 인정하면서 보험료 미납부로 인한 가입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낮은 연금 지급을 방지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는 크레딧 기간의 보험료를 사전에 국고 부담으로 납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였다. 연금액 산출식의 개인연금자산 중 65세 이전 사망자 적립금배당이란 동일 세대(연령대) 가입자가 연금수급 전에 사망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같은 연령대의 가입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스웨덴 연금제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상황과 연금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그만큼 더 연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출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자동재정균형장치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전에는 소정의 기금을 보유하는 (수정)부과방식이 채택되어 운영되었지만 연금개혁 이후에는 확정기여형의 연금제도로 바뀌면서 과거채무 부문이 유지되고 기대수명과 경제상황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금재정수지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재정균형장치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스웨덴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1월 이후 모든 공적연금 관련 업무는 스웨덴 연금청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스웨덴 연금청이 신설되기 전에는 보건사회부 산하의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소득비례연금(IP)과 최저보증연금(GP)을 관리하였고, 프리미엄 연금청에서는 적립식 개인계정연금(PP)만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했다. 이런 연금관리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가입자와 연금수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4. 개인연금자산=Σ(매년도 기여금×재평가율)+(65세 이전 사망자 적립금 배당-관리비용)
기대여명=최근 5년간 남녀 구분없이 평균하여 산정
연금액조정률=매년도재평가율 - 1.6%

나. 적립식 개인계정연금(Premium Pension)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의 적용대상은 소득비례연금과 동일하게 16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 자영자, 사회보장 급여수급자, 크레딧 수혜자 등이다. 공적연금의 한 부분으로서 소득비례연금과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자연스럽게 소득비례연금 가입자는 적립식 개인계정연금에 가입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합산보험료(소득비례연금 18.5%)의 2.5%가 적립식 개인연금 보험료로 전환된다.⁵ 이 보험료는 은행, 투자회사, 민간보험회사 등이 운영하는 연금펀드에 개인계정을 만들어 투자되기 때문에 개인별 시장운용수익률에 의해 연금급여가 달라진다.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자유시장 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연금펀드들 간 자유로운 경쟁과 투자를 보장(지역적 제약없이 해외투자도 가능)한다. 스웨덴 연금청이 승인하는 민간 펀드는 자유롭게 1~15개로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펀드를 바꿀 수 있다. 공적연금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지만 펀드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세금공제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도 없다. 수급요건도 소득비례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는 연간 최소한으로 정해진 크로나(SEK)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며, 61세부터 유동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연금의 해외 지급이 가능하다.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text{연금액}(PP) = \frac{\text{개인연금자산}^6}{\text{수급시점의 기대여명}}$$

연금액은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적립식개인계정연금 보험료 2.5% 누적치)와 적립금의 운용수익, 사망배당금에 따라 결정된다. 타 연금과 다른 점은 적립금의 운용수익, 즉 개인이 투자한 펀드 시장운용 수익률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득비례연금은 경제상황과 연금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자동재정균형장치를 이용해 재정적 균형을 자동적으로 맞추어 나간다. 반면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가 올 경우, 연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스웨덴 연금청에 부여하고 있다.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보건사회부 산하에 설립된 프리미엄 연금청에서 전담하였지만, 2010년 1월 이후에는 스웨덴 연금청에서 전체적인 공적연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가는 연금청을 통해 연금펀드와 개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5. 1938년부터 1953년까지의 출생자는 해당 비율이 더 적어짐.

6. 개인연금자산 = 퇴직시점의 총 적립금액(적립금 운용 수익, 사망배당금 포함)
수급시점의 기대여명 = 급여수급시점의 해당연령집단의 기대여명

국세청에서 18.5% 보험료를 징수하면 연금청으로 모든 보험료가 이전되고, 그 중 2.5%의 적립식개인계정연금 보험료가 가입자 개개인이 선택한 펀드에 배분된다. 이에 따라 펀드 운용사들은 보험료를 배분받지만 어떤 가입자가 선택했는지 알지 못하며, 가입자들 또한 펀드 운용사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가입자는 언제든지 펀드 운용자를 교체할 수 있어서 이들 사이에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익률 경쟁도 일어난다. 또한 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금청은 모든 가입자를 대신하여 매일 계정상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펀드의 수익, 비용, 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한다. 그로 인해 가입자는 따로 부담하는 비용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스웨덴 연금청에 개인계정 보험료 적립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펀드 관리자에게 계약시 정한 펀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가입자가 민간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적립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제7AP기금(default fund)에 의해 관리되는데, 이 디폴트 펀드는 탈퇴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려 디폴트 펀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의 적립식개인계정연금 운영에서 디폴트 펀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최저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

종전의 보충연금제도와 기초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최저보증연금이다. 이는 연금소득조사⁷, 즉 연금수급권이 없거나 최저보증연금액 미만의 연금수급자를 선별하여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스웨덴 연금제도 중 가장 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수급대상은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고 소득비례연금이 낮거나 없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다. 완전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25세 이후 40년을 거주하여야 하지만 난민의 경우 예외로 사회보장협정 등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다. 최저보증연금은 결혼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최저보증연금의 최대금액은 미혼 기준으로 볼 때 기본액의 2.13배(2016년 기준 7,863SEK), 기혼의 경우 1.9배(2016년 기준 7,014SEK)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0년 이하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급여수준을 감소시켰는데 매 1년마다 2.5%씩 감액 지급한다. 또한 연금소득(소득비례연금과 적립식 개인계정연금 합계액)이 최저보증연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7. 개인연금 소득을 제외하고, 공적연금 수급액을 대상으로 함.

최저보증연금의 재원은 매년 물가에 따라 연동되어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며,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라. 유족급여 및 장애급여

스웨덴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크게 미망인연금과 배우자연금 및 보장유족연금이며, 장애급여(장애연금)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족급여

가) 미망인연금

미망인연금은 1944년 이전에 출생하고, 사망자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 가입자의 사망시점에 조건을 충족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경과규정으로 1945년 이후에 출생하고 사망자와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가입자 사망일 사이에 혼인하여 1989년 12월 31일 또는 가입자 사망일에 수급요건을 충족한 여성에게도 적용한다. 사망자는 스웨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수급조건이 있으며 해외지급도 가능하다.

나) 배우자연금(조정연금)

배우자연금은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에 기초하여 사망자가 취득한 노령연금 권리의 55%를 지급한다. 연금은 12개월간 지급되는데 18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살면 12개월을 더 지급한다. 또한 가장 어린 자녀가 12세가 도달하는 달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다) 보장유족연금

보장유족연금은 65세 미만이고 조정연금이나 미망인연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지급하는데, 사망자가 최소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해야 하며, 40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 시 최대연금을 받는 조건이 된다. 가입자가 64세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시점에 사망자 나이와 64세 차이만큼 거주기간으로 인정되고, 연금은 재혼(또는 일정 조건하의 동거)이나 유족이 65세에 도달된 경우 중단된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면 18세(학생인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고아연금(자녀연금)을 지급하며, 고아연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 18세(학생인 경우 20세)까지 유족자녀에게 유족자녀수당을 지급한다.

2) 영구장애급여

스웨덴에서 지급하는 영구장애급여는 장애연금을 의미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발생 시 제도에 가입 중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최소 25%이상 상실되고, 최소 3년 이상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40년의 거주기간과 소득비례급여가 없고 완전장애일 경우 연간 105,600크로나를 급여로 지급하지만,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일 경우 연금은 매 1년마다 2.5%씩 감액 지급한다.⁸ 또한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상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상시간병보조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스웨덴 공적연금의 개혁 전후의 내용에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2> 스웨덴 공적연금의 개혁 전·후 비교

구분	개혁이전	개혁이후
연금종류	보편적 기초연금(AFP) 공적소득비례연금(ATP) 보충연금	소득비례연금(IP) 적립식 개인계정연금(PP) 최저보증연금(GP)
가입대상	16~65세 근로자와 자영자	16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등
급여유형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소득비례)연금 산정기준	30년 중 최고소득 15년 평균	평생소득
연금지급연령	65세	61세~
보험료 부담	사용자(자영자 포함)만 부담	노사균등부담
보험료율	18.5%	IP : 16% PP : 2.5%
재정방식	부과방식	IP : 부과방식 PP : 적립방식 GP : 공공부조
최저보장	(소득조사) 보충연금	(연금조사) 최저보증연금
관리기관	사회보험청	연금청

8. <http://www.nps.or.kr>, 세계의 연금제도(스웨덴)편을 참조함.

2. 스웨덴 연금기금 운용⁹

스웨덴의 연금기금 운용펀드인 AP(펀드)는 재무성 산하 정부기관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준비금과 적립식개인계정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운용한다. 2001년에 최초 4개의 기금운용 조직에 각각 1,340억 SEK를 배정하였다. 여러 개의 기금을 설립한 배경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힘을 가진 단일 기금의 형성을 막고 운용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으며, 기금운용 조직을 분할하자 각 AP간 경쟁이 생기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스웨덴 AP기금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스웨덴 AP 기금현황(2013년 기준)

구분	기금규모	수익률
AP1	2,525억 SEK	11.2%
AP2	2,647억 SEK	12.7%
AP3	2,585억 SEK	14.1%
AP4	2,600억 SEK	16.4%

(출전 : 머니투데이 스톡홀름(스웨덴), 2014.7.24.)

국가연금펀드인 AP펀드는 매달 거둬들이는 보험료 중에서 연금지급에 충당하고 남은 자금을 이용한다. 펀드 AP1~4와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 AP7을 합한 전체 국가연금펀드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 5,000억 크로나 수준이다. 이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연금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임금하락, 고용률 하락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연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질 때 충격을 막는 역할을 한다.

소득비례연금의 준비금은 2000년에 신설된 AP1~4, AP6 등 5개의 정부기금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AP1~4는 동일한 초기자본금과 투자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적,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용조직, 자산구성,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AP1~4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AP6¹⁰는 주로 스웨덴 내 비상장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AP기금과는 다른 법률 적용을 받는다. 또한 자산규모가 다른 AP의 1/10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기금으로 자본의 유출입이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9.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 대부분을 인용.

10. Sixth AP fund Act를 따르며 자산규모는 다른 기금들의 10% 미만.

AP1~4의 법적 소유자는 스웨덴 정부이지만, 준비금 운용의 성과는 자동재정균형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금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운용수익률이 경제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총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동재정균형장치가 작동하여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스웨덴의 연금 종류별 자금운용수단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스웨덴 연금 종류별 자금운용수단

구분	자금운용 수단
소득비례연금	국가연금펀드 AP1~4
적립식 개인계정연금	AP7 or 민간 펀드
최저보증연금	-

AP1~4와 달리 기금법은 AP7만이 오직 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AP7은 자산구성을 관리자가 선택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AP1~4를 포함한 다른 공적연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나타낸다. 실제로 AP7은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운용사로 본다. AP7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자산구성 혹은 수익률-위험 조합의 선택은 관리자가 아닌 가입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투자선택이 보장된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스웨덴 민간 펀드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용하며, 가입자들은 개별 펀드운용사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률과 투자위험을 토대로 최대 5개의 펀드운용사를 선택하고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펀드의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교체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모든 기금 운영자는 매년 기금운용 결과와 경비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가입자들에게 보고해야하는데 ‘오렌지 봉투(Orange Report)’라 불리는 운용보고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3. 스웨덴 직역연금¹¹

스웨덴의 직역연금은 확정급여제도 방식으로 일정부분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직역연금에서 확정기여제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사협약에 포함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스웨덴의 직역연금은 전체 근로자의 약 90%가 가입하고 있다. 직역연금은 민간부문의 사무직근로자연금(ITP), 노동직근로자연금(SAF-LO)과, 공공부문의 중앙정부공무원연금(PA-03), 지방정부공무원연금(KAP-KL)으로 크게 4대 직역연금이 존재하며 이와 비슷한 소규모의 직역연금도 존재한다.

모든 직역연금의 재원은 고용주의 기여로 충당하며, 수급연령은 65세이나 조기퇴직연금으로 감액된 연금을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직원을 위해 직역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직원들 개개인은 적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어떤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의 직역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가입확대가 최근에 이뤄져 아직까지는 노후소득 중 직역연금의 비중이 작지만, 향후에는 직역연금의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현 스웨덴 연금제도

가. 2015년 스웨덴 연금 현황

2015년 스웨덴의 국민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의 보험료 수입 총합은 4,630억 SEK로 추정되며, 이 중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2,840억 SEK로 총 보험료 수입의 61%를 차지한다. 자영자를 포함하여 2015년도 스웨덴 근로수입 총액은 1조 6,300억 SEK에 달하는데 즉, 급여의 약 28%¹²가 연금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운영자산은 2조 1,270억 SEK에 달하는데, 이는 스웨덴 연금의 총 운영자산 중 약 43%를 차지한다. 또한 스웨덴 연금청에 의하면 2015년도에 국민연금으로 2,700억 SEK가 지불되었으며 총 연금지급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 적립식 개인계정 연금) 이외에도 연금청은 최저보증연금으로 160억 SEK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한국노동연구원(2010)

12. $100 \times (4,630 \text{억} / 1 \text{조 } 6,300 \text{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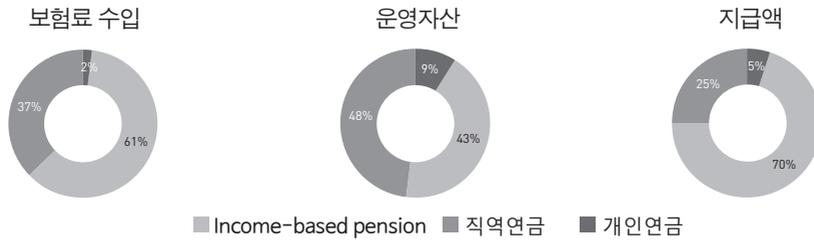
〈표 5〉 스웨덴 연금 수입과 지출 및 자산규모¹³

(단위 : 10억 SEK)

구분	보험료 수입	운영자산	지급액
Income-based pension	284	2,127	270
직역연금	170	2,369	98
개인연금	9	478	21
총계	463	4,974	389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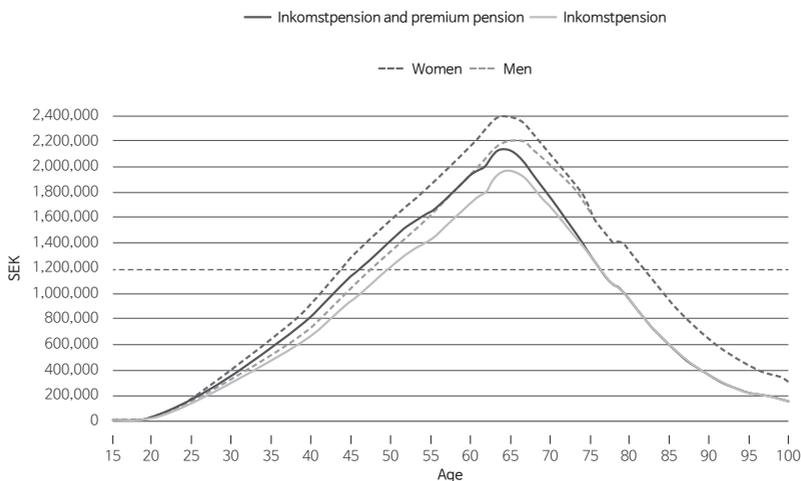
〈그림 1〉 스웨덴 연금 수입과 지출 및 자산규모 원형차트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나. 2016년 스웨덴 평균 연금부채

〈그림 2〉 2016년 평균 연금부채¹⁴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p.31.)

〈그림 2〉는 2016년 평균 연금부채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1,200,000 SEK(한화 약 1억 6,717만원)의 수평선은 모든 개개인의 연금부채 평균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65세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부채가 증가하며, 그 이후부터는 퇴직으로 인하여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점선은 가입 남성 평균부채를 나타내며 실선은 가입 여성 평균부채를 나타내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평균 연금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2016년 스웨덴 소득비례연금(IP)과 적립식개인계정연금(PP) 비용

2016년 말 현재 시점의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IP)과 적립식개인계정연금(PP)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보험료 및 자본관리의 총 비용은 타 비용을 포함하여 약 64억 SEK이다. 그 중 약 24억 SEK는 연금청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데, 보험료관리 비용(14.72억 SEK)과 국민연금기금 운영비용(8.9억 SEK)의 합계이다. 2016년 스웨덴 노령연금의 비용 및 부담금은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6〉 노령연금 관리 비용

(연도 : 2016, 단위 : 백만 SEK)

구분	소득비례연금(IP)	적립식개인계정연금(PP)	총계
보험료관리 비용			
-연금관리	455	379	834
-타 기관으로 이체	406	63	469
-할부상환 및 이자대출		169	169
총	861	611	1,472
자본관리 비용			
-국민연금기금 운영비	890		890
-관리수수료	1,219	2,033	3,252
고정관리수수료	847		847
성과수수료 ¹⁵	372		372
-거래비용 ¹⁶	289	428	717
총	2,398	2,461	4,859
총계	3,259	3,072	6,331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p.37.)

13. 직역연금, 개인연금 지급액은 근사치이며, 65세 이상자만 포함. 자료는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Income-based pension은 IP+PP(국민연금으로 칭함)로 표시됨. Orange Report 2016, Swedish Pensions Agency.

14. Inkomstpension은 소득비례연금을 의미하며, Premium pension은 적립식 개인계정연금을 의미함.

1) 소득비례연금 비용

2016년 스웨덴 연금청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소득비례연금 관련 비용은 17.51억 SEK이고, 이 중 8.61억 SEK는 보험료관리, 8.9억 SEK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비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자산운용 비용은 국민연금기금 운영비 8.9억 SEK와 8.47억 SEK의 고정관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17.37억(=8.9억+8.47억) SEK이다. 관리수수료 중 성과수수료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성과수수료는 일반적인 관리비용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외부 관리자와 거래 결과 발생하는 위험 및 보상을 공유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수수료와 거래비용과 같은 중개수수료는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직접비용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성과수수료로 3.72억 SEK, 중개수수료 및 기타 거래비용으로 2.89억 SEK를 지불하였다. 만약 이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면 2016년 소득비례연금의 총 관련비용은 32.59억 SEK가 된다.

2) 적립식개인계정연금 비용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의 자본관리 비용은 고정관리수수료와 성과수수료가 포함되며 순 수수료는 총 20.33억 SEK로 계산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최대 수수료를 펀드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새로운 모델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급 후 최대 0.89%, 채권형펀드는 0.42%, 혼합 및 발전기금의 경우 0.62%로 제한된다. 이 새로운 모델은 가입자들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고, 2015년 첫 해의 비용감소 효과는 2억 SEK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의 관리수수료인 20.33억 SEK에 더불어 거래비용은 4.28억 SEK이다. 이 거래비용은 주로 유가증권 거래를 할 때 유동성 매매의 일환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로 구성되며 2016년에는 4.28억 SEK 이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비례연금 비용과 적립식개인계정연금 비용은 각각 <표 7>, <표 8>과 같다. 소득비례연금 비용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에 조금 낮아졌으며, 적립식개인계정연금 비용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특정결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국민연금기금이 지불하는 수수료

16.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에 부과된 중개수수료 및 청산수수료

〈표 7〉 소득비례연금 비용(2012~2016)

(단위 : 백만 SEK)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 관리 비용					
-연금관리	491	449	463	462	455
-타기관으로 이체	380	380	408	406	406
총	871	829	871	868	861
자본관리 비용					
-국민연금기금 운영비	845	820	865	913	890
-관리 수수료	715	994	1,117	1,273	1,219
고정 관리 수수료	506	679	828	927	847
성과 수수료	209	315	289	346	372
-거래비용	192	209	256	322	289
총	1,752	2,023	2,238	2,508	2,398
총 계	2,623	2,852	3,109	3,376	3,259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p.38.)

〈표 8〉 적립식 개인계정연금 비용(2012~2016)

(단위 : 백만 SEK)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 관리					
-연금관리	307	291	323	342	379
-타 기관으로 이체	59	59	64	63	63
-할부 상환 및 이자대출	70	138	172	181	169
총	436	488	559	586	611
자본관리 비용					
-관리 수수료	1,371	1,646	1,868	2,029	2,033
-거래비용	211	262	329	415	428
총	1,582	1,908	2,197	2,444	2,461
총 계	2,018	2,396	2,756	3,030	3,072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p.38.)

라. 2016년 스웨덴 연금 기여금

〈표 9〉 2016년 연금기여 종류

(단위 : 백만 SEK)

구분	IP	PP	중앙정부 예산	2016 총합	2015 총합
사용자 기여	116,399	34,467	18,226	169,092	161,302
자영자 기여	3,113	918	484	4,515	3,483
일반 연금(근로자) 기여	112,164			112,164	108,142
국가 노령연금 기여	24,718	3,825		28,543	26,115
정산 금액	306	645	-458	493	995
총 계	256,700	39,855	18,252	314,807	300,037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p.72.)

스웨덴 연금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기여가 있다. 이런 기여금 수익은 연금청으로 모두 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가는 노령연금 기여의 한 부분은 연금수급 자격의 소득상한 초과분의 일부이다. 이러한 기여금은 연금 크레딧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령연금기여금은 사용자와 자영자가 지불하며, 일반 연금기여금은 연금크레딧을 얻기 위해 근로자들이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노령연금기여금은 질병 수당 및 실업 수당과 같은 특별이체 수당으로 인한 연금크레딧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출된다. 더불어 중앙정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연금수급자를 위해 연금기여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위의 〈표 9〉는 스웨덴 사회보험청과 연금청이 2016년에 거둬들인 연금기여금을 보여준다. 사용자 기여와 자영자 기여 금액은 사회보험청 계좌로 들어가고, 소득비례연금(IP) 기여금은 연금청으로 이전되어 국민연금기금으로 이체된다.

일반 연금기여금은 전액이 국민연금기금으로 이전되지만, 사용자 기여와 자영자 기여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적립식개인계정연금, 중앙정부 예산에 사전적으로 예비 할당을 한다. 이는 정부에서 정하고 스웨덴 연금청에서 계산된 고정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적립식개인계정 연금청에서는 특정연도에 대해 얻은 연금크레딧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잘 거둬들였는지, 중앙정부 예산에서는 기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소득부분의 기여금을 거둬들였는지 확인하여 2년 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 적립식개인계정연금,

국민연금기금간의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산을 통해 기여금 수입이 재분배된다. 정산이 결정되면 먼저 적립식개인계정연금,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 해의 정확한 기여금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배분된다.

마. 적립식개인계정연금 지출액

〈표 10〉 적립식개인계정연금 지출액

(단위 : 백만 S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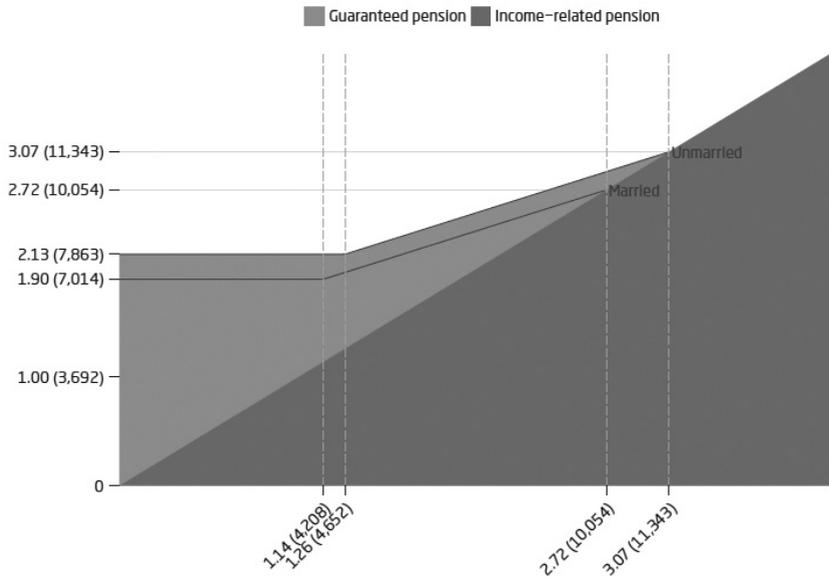
구분	2015	2016
연금 지불액	5,557	6,962
- 기금 보험	4,864	6,112
- 수익성 연금 보험	693	850
유럽 공동체 송금	2	1
총 계	5,559	6,963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p.90.)

은퇴를 할 때 연금가입자는 개인계정 펀드에 누적된 잔액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연금액은 연금가입자가 선택한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의 또 다른 옵션은 은퇴 시 또는 그 이후에 수익성 연금이 있는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익성 연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에는 명목적으로 보장된 월별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 보장비율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할 경우에는 연금가입자는 월별 보충 형태로 환급받으며 이는 매년 달라지기도 한다.

바. 2016년 최저보증연금(GP)

〈그림 3〉 2016년 스웨덴 최저보증연금 감액 슬라이드¹⁷



(출전 : Swedish Pension Agency, 2016, Orange Report, p.25.)

스웨덴 연금제도 중 가장 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최저보증연금액은 연금소득조사를 통해 최저연금을 보장한다. 〈그림 3〉은 2016년 스웨덴 최저보증연금 감액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소득비례연금 수급액이 최저보증연금에서 설정한 기초선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모자라는 차액만큼 지급된다.¹⁸ 최저보증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는데, 2016년 물가와 연동되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연간 44,300 SEK이며 한 달로 계산했을 때 약 3,692 SEK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미혼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GP는 매달 7,863 SEK(기준의 2.13배)이고, 기혼자의 경우 7,014 SEK(기준의 1.9배)이다.

최저보증연금액은 보충급여 방식의 단점인 기초선 근처에서의 근로와 기여회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감액비율 적용방식은 저소득 구간에서는 최대보장금액에서 소득비례연금 수령액의 100%를 감액하지만 연금액이 기준금액의

17. Guaranteed pension은 최저보증연금을 의미하며, Income-related pension은 소득비례연금을 의미함.

18. 박진화, 이진숙(2014)

1.26배(4,652 SEK) 이상인 구간에서부터 점차 감액비율을 낮춘다.¹⁹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미혼자는 월 소득이 11,343 SEK 이상, 기혼자는 월 소득이 10,054 SEK 이상일 경우 2016년에는 최저보증연금액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액비율의 적용으로 소득비례연금이 11,343 SEK 일 때 까지는 조금이라도 최저보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혼 연금수급자 소득이 물가와 연동되는 기준금액의 2.26배라고 가정해보자. 먼저 미혼 연금수급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GP인 기준금액 2.13배에서 최저 기준금액 1.26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다 제외하면 0.87배(=2.13-1.26)가 된다. 그런 다음 본인의 원래 소득인 기준금액 2.26배에서 최저 기준금액 1.26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면 1.0배(=2.26-1.26)가 되는데 이 1.0배의 48%를 감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물가와 연동되는 기준금액의 0.39배²⁰ 만큼을 GP로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득비례연금과 함께 총 기준금액의 2.65배(=0.39+2.26), 약 9,784 SEK(=2.65×3,692)를 받게 된다.

4. 스웨덴 연금개혁의 시사점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잠재적 연금부채를 감소시키고자 새로운 연금제도로써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을 도입한 나라이다. 그 이후 스웨덴은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국가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98년 스웨덴의 연금개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16세부터 가입연령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연금가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 동안 얻은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생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근로와 사업소득 외에 육아수당, 상병수당 등도 소득에 모두 포함하여 연금보험료로 징수한다. 이런 개인 생애소득의 18.5%가 연금보험료로 각출되는데, 16%는 당해 연도 연금지출을 위한 부과방식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5%는 보험료 적립계정에 저축되어 이자가 가산되며 연금가입자에게 적립계정의 기금관리자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보험료는 사용자(자영자 포함)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자영자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여방식이 변경되었다.

19. 박진화, 이진숙(2014)

20. 0.39배는 $(0.87-0.48 \times (2.26-1.26))$ 의 산식에 따라 산정됨.

스웨덴의 새로운 연금제도는 경제성장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의해 조정되도록 새롭게 설계되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가 적용할 수 있도록 퇴직시점의 평균수명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경제상황이 침체되거나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연금액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되어 경제 및 장수위험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고, 동시에 자동재정균형장치 운영으로 재정불균형을 맞춰나가기도 한다.

스웨덴은 구연금제도의 일종인 보충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최저보증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수급권이 없거나 최저보증연금액 미만의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다. 오로지 공적연금소득이 일정소득 이하면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금수급자의 자산이나 소득심사에 비해 관대한 기초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연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소득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지만, 상기의 제도는 적정소득 이상의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학연금제도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소득비례연금(IP) 제도는 독자적인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연금가입자에게 매년 본인의 연금수급권과 미래수급권 전망치와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가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대부분 국가의 공적연금은 국가예산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스웨덴과 같이 독자적인 재원조달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통해 알아본 스웨덴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강제적용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최저보증연금 제도 부분에서만 담당하도록 하여 구제도에 비해 국가의 부담을 대폭 줄였고, 기존의 확정급여방식을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연금재정상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또한 연금급여를 실질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금재정부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학연금은 국내 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확정급여제도 하의 급여액은 소득 또는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이나 일정한 금액으로 급여 산정 공식에 따라 미리 확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급여액은 과거의 소득과 소득 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연금지급액을 충당해야하는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보험료 또는 국고의 지원을 증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책임을 진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퇴직 후 노후기간동안 안정된 급여를 보장하여 경제적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하의 연금은 경기악화, 인구고령화 등으로 급여 및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연금급여 지출이 축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 급여의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급여 하향조정과 보험료의 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스웨덴은 기존 급여방식을 명목확정기여(NDC)제도로 전환시킴으로써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적연금의 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사적 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여금만 확정될 뿐 급여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연금급여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다. 또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이자수입이 개인별 적립금 계좌에 관리되고 사전 적립이 되지만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노후생활의 불안정은 보호되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생활 불안정을 대가로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면 사회보장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제도는 개인이 적립한 원금이 기록된 그대로 보장되고 일률적으로 이자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투자실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이론상 확정기여제도 하에서는 적립된 기여금과 이자수입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적연금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인 경제침체, 기대수명 연장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재정위기가 없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학연금의 확정급여방식제도 하에서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발생하는 재정상의 문제점이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에서는 급여산식의 수급시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연금급여가 감소함으로써 해결된다. 수급시점의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급여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다시 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보전하도록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전환비용이 들지 않는다. 명목확정기여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어 개인별 적립금이 개인계정에 기록은 되지만 사실상 실제로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용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학연금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꾸준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을 제약하는 큰 원인은 기존의 연금구조이다.

기존의 제도는 많은 이해관계 속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에는 모든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타결안이 존재해야한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기여와 각종 연금 크레딧 도입 등과 같은 것들은 전체적인 연금개혁방향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한 포괄적 타결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을 고민한 스웨덴 및 연금개혁 선진 국가들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학연금 또한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5장 맺음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이다. 그로 인해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건실한 연금제도의 설계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핵심사항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웨덴의 연금개혁 과정과 내용은 꽤 오랜 시간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되었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장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입자와 수급자가 각자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경제성장 저조, 경제상황 악화, 고령화가 지속되면 기존의 수급자는 물론이고 신규 수급자들도 연금액이 그와 연동하여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노후계획 조정,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활용, 은퇴시점 선택 등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유인을 부여했다.

또한 스웨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연금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연금제도로서 명목확정기여 방식(Nominal Defined Contribution)을 도입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은 가입자 개인의 연금계좌에 자신의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낸 만큼을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보험료율을 고정시켜 불확실한 미래의 평균여명, 금리, 소득성장률을 연금급여 산식이 흡수,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 확보를 추구하는데 비해 스웨덴은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차이로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사학연금제도에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연금부채를 공식적인 재정적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명목확정기여 방식을 도입한 스웨덴처럼 사학연금도 연금충당부채 해결을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 방식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뤄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제도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해보면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진(2014), 「공적연금의 이해 II」, 국민연금연구원.
- 박영곤(2002),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2-05.
- 박진화 · 이진숙(2014), 「스웨덴과 영국의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 변화 연구: 제도의 유형과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3호, pp. 191~219.
- 배준호(2005),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pp. 113~152.
- 손혜경(2010), 「스웨덴의 노령연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2월호, pp. 67~74.
- 양재진(2002), 「연금 개혁의 '제 3의 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제40권 제2호, pp. 63~83.
- 윤석명(1999), 「스웨덴 공적연금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36권 pp. 59~6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책 보고서 2012-40.
- Ann,-Charlotte Stahlberg(2006), 「연금개혁 : 스웨덴의 경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토론회
- Swedish Pensions Agency, ORANGE REPORT(2016).
- 스웨덴 연금청 홈페이지(<http://www.pensionsmyndigheten.se>)